

제 안 설 명 서

【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개정(안) 】

영 주 시

(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)

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(안)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0. 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 이유

「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」위원 시·군으로 문경시, 영덕·울진군의 신규 가입과 위원시·군의 협의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명의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행정협의회 위원을 안동·영주·문경시장, 의성·청송·영양·영덕·예천·봉화·울진군수로 함. (안 제4조)
- 「실무협의회」위원과 간사인 소속자치단체 기획담당관(실장)을 기획감사실장(담당관)으로 함. (안 제7조, 제8조)

3. 규약개정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 자료

- 경상북도 북부권행정협의회 규약(현행) 1 부.
- 관련법령(발췌) 1 부

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(안)

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안동·영주시장, 의성·청송·영양·예천·봉화군수”를 “안동·영주·문경시장, 의성·청송·영양·영덕·예천·봉화·울진군수”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“기획담당관(실장)” 및 제8조중 “기획실장(담당관)”을 각각 “기획감사실장(담당관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8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(안)]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구성) 협의회의 위원은 <u>안동 · 영주시장, 의성 · 청송 · 영양 · 예천 · 봉화</u>군수로 하고, 회장은 정기회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구성) ----- <u>안동 · 영주 · 문경시장, 의성 · 청송 · 영양 · 영덕 · 예천 · 봉화</u> <u>울진</u>군수로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실무협의회) ①<생략>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자치단체 <u>기획담당관(실장)</u>과 협의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 ③<생략></p>	<p>제7조(실무협의회) ①<현행과 같음> ② ----- -- <u>기획감사실장(담당관)</u> -- ----- ----- ③<현행과 같음></p>
<p>제8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장의 소속자치단체의 <u>기획실장(담당관)</u>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간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장(담당관)</u> ----- --</p>

慶尙北道 北部圈行政協議會 規約(現行)

慶尙北道 北部圈行政協議會

慶尙北道 北部圈行政協議會 規約(現行)

제1조 (명칭) 이 행정협의회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,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,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권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위치) 협의회는,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둔다.

제4조 (구성) 협의회는 위원은 안동·영주시장, 의성·청송·영양·예천·봉화군수로 하고, 회장은 정기회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협의사항)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5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, 관리에 관한 사항
9.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 (협의회 운영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 년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요청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정기회 일정은 회장이 정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.
② 위원은 협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부분회의로 나누어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소집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.

제7조 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둔다.

-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기획담당관 (실장)과 협의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할 수 있다.

제8조 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의 기획실장 (담당관)으로 한다.

제9조 (회의록의 작성) ① 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아래 기록보관한다.

- ②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 (경비부담) ①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공동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광역개발사업 등 공동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결정하여 부담한다.

제11조 (회계) ①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.

- ②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12조 (결의사항의 처리)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조정요청 요구)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위원이 직접 조정요청 할 수 있다.

제 14조 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5조 (운영세칙)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

부 칙

이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안동·영주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폐지한다.

관 련 법 령 (발 취)

[지방자치법]

제142조(행정협의회의의 구성)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의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[지방자치법시행령]

제48조 (행정협의회의의 구성기준) ①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의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등의 필요를 참작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구성한다.

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의중 수도권행정협의회의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의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
[행정협의회의의구성및운영규칙]

제 2 조 (구성)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의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장·인천직할시장·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대도시권협의회의의 경우 관련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, 그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장으로 한다.